

의안번호	2204299
의 퇴 인	이강일 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E30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구간·납입한도·가입대상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49억원, 2029년 8,45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조 7,655억원(연평균 3,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안 제91조의18)	-249	-249	-249	-8,454	-8,454	-17,655	-3,53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 구간) 한도 없이 소득세 전액에 비과세 적용 - (현행)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액에는 9% 세율 적용 - (개정안) 소득액 전액에 비과세 적용 ○ (납입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1차연도에는 2억원 일시납을 허용 - (현행) 연간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 - (개정안) 1차연도 2억 2천만원, 2~5차연도 2천만원, 5년간 총 3억원	-
2	안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대상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2	안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

- 최근 ISA의 이자·배당소득세액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비과세 대상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 2021~2022년 ISA 소득세 신고자료(국세청)를 활용
 - 다만, 이는 2021년 신설된 투자중개형 ISA(주식 포함)의 최소가입기간(3년) 도래 이전의 소득세 신고자료임¹⁾
 - 최근 투자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ISA 소득세액 규모를 조정함
- 납입한도액 인상 시 납입액 규모가 한도액 인상과 동일한 배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은 가입 첫 해에 2억원의 일시납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추계에서는 전체 납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계하고 연도별 납입금액은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1) ISA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e	2025e
조세지출액(억원)	0.46	1	8	24	138	54	75	231	553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대상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최근 이자·배당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ISA 신규 가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ISA 가입 시 소득금액, 세율 변화 등을 추정
 - (납입금액) ISA에 매년 한도 금액(총 3억원)만큼 납입하는 것으로 전제
 - (소득금액) '납입금액 × 수익률'로 추정하되, 연간 납입액에 대한 투자 배분 상황(예적금 또는 주식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익률을 유가증권 평균 시가배당률²⁾ 수준으로 전제해 반영
 - (세율 변화) 현행 종합과세 적용에 따른 실효세율과, ISA 비과세 적용 시 차이
 - ISA 과세특례 적용은 최소가입기간 요건(3년)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동 추계에서는 가입 3년 후 손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전제
 - 가입자가 5년간 투자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3년) 이후 만기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유지 기간 및 소득실현 시점 등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움
 - ISA 가입 인원 수, 납입금액, 수익률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ISA 과세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투자성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존 이자·배당소득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ISA 과세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나,³⁾ 현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효과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은 이 법의 시행 전에 가입한 계좌에도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 법의 시행 이후 IS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세수효과가 최소가입기간(3년) 경과 후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2) 시가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어 산출하며, 2022년 유가증권 시장의 배당률은 2.7% 수준

3) 법률 제18634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

- (추계방법) 현재 ISA 비과세 한도 소득금액(일반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를 초과하여 9%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세액을 반영
 - 납입한도 인상(총 1억원 → 3억원)에 따라 납입금액은 한도액 인상과 동일한 배율(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실적) ISA 소득세액 자료⁴⁾만으로는 일반 또는 서민·농어민형 계좌를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의 납입금액 자료⁵⁾의 계좌 유형 비율을 반영
 - 2021~2022년 평균 ISA 이자·배당소득세액은 200~400만원 구간 22.9억원, 400만원 초과 구간 23.6억원으로 집계

[표 2] ISA의 연도별 이자·배당소득세액: 2021~2022년

(단위: 억원)

소득금액 구간별	2021년	2022년	2021~2022년 평균
200~400만원	38.3	7.4	22.9
400만원 초과	42.0	5.2	23.6

주: 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집계된 '인별 ISA 만기·해지 시 소득액 구간별 자료(국세청)'를 활용하여 소득금액 수준별 자료로 변환함

2. 원자료에는 9% 외 다른 세율(만기 전 해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등) 적용에 따른 세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이 어려워 모두 9%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납입금액 기준 2021~2022년 평균 일반계좌 비중은 63.0%, 서민·농어민 계좌 비중은 37.0% 수준

[표 3] ISA 가입유형별 납입금액 현황: 2021~2022년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1~2022년 평균	
	일반	서민·농어민	일반	서민·농어민	일반	서민·농어민
납입금액	10.1	2.8	8.9	9.7	9.5	6.3
(비중)	(78.2)	(21.8)	(47.7)	(52.3)	(63.0)	(37.0)

주: 각 연도 말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세청 제공자료

5)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

□ (연간 세수효과) ISA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 시 연간 소득세수는 2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개정안의 비과세 전환 구간 소득세액은 2021~2022년 평균 38.0억원 수준
 - 일반계좌(소득금액 2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액은 29.3억원
 - 서민·농어민계좌(소득금액 4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액은 8.7억원

[표 4] 개정안에 따른 ISA 비과세 전환 대상 구간의 소득세액: 2021~2022년 평균 기준
(단위: 억원)

계좌 유형별	ISA 소득금액 구간별		합계	
	200~400만원	400만원 초과	계좌유형별	전체
일반 ¹⁾	14.4	14.9	29.3	38.0
서민·농어민 ¹⁾	-	8.7	8.7	

주: 1) 계좌 유형별 소득세액은 전체 소득세액에 일반형 63.0% 및 서민·농어민형 37.0%를 적용해 산출함

- ISA 소득세액은 최근 가입금액 증가 추세 반영 이전의 실적이므로, 최근 납입금액 추세(21~22년 평균 대비 23년 기준⁶⁾, 2.2배 증가)를 반영해 조정함
- 납입한도 인상 효과의 경우 추가적인 가입성향 등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납입한도 3배 인상에 따라 감면세액도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
 - 연간 세수효과는 '비과세 전환 구간의 소득세액 × 납입추세에 따른 조정 × 납입한도 인상 효과'로 산출

나. 대상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추계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대상으로, '대상 인원 × 1인당 평균 ISA 소득금액(추정) × ISA 가입에 따른 세율 변화'로 추계

□ (인원) 2022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19.1만명을 기준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르면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전원⁷⁾이 가입 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15~45%) 또는 최소 14% 세율을 적용함⁸⁾

6) 각 연도, 9월 말 기준 금액을 활용

7) 다만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 등)이므로, 동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8)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14%)보다 낮지 않도록 세액을

- (납입금액) 대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1인당 연간 ISA 납입한도(1차 연도 2억 2천만원, 2차연도 이후 2천만원) 만큼 납입하는 것으로 전제
 - 2022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이자·배당소득금액 규모를 참고해,⁹⁾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모두 연간 납입한도만큼 납입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전제함
- (소득금액) ISA 납입금액(추정)을 바탕으로, 3년간 누적 이자·배당소득금액이 1,994만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제
 - 만기 전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연도별 이자·배당소득금액이 다음 연도의 운용금액에 재투자되는 상황을 가정
 -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연간 납입금액에 수익률(2.7%)¹⁰⁾을 곱하여 산출

[표 5] 개정안에 따른 ISA 운용금액 및 이자·배당소득금액 추정

(단위: 만원)

	가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적 / 합계액
운용금액 ¹⁾ (A)	22,000	24,594	27,258	27,258
이자·배당소득금액 ²⁾ (B=A×수익률)	594	664	736	1,994

주: 1) 연도별 운용금액은 전년도 납입금액 및 이자·배당소득금액, 당해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2) 매년 이자·배당소득금액은 납입금액에 수익률(유가증권 평균 시가배당률, 2.7%)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수익률은 매년 동일할 것으로 가정

1. 자산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금액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과세 시 한계 명목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라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4%의 세율을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2조) :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일반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 2천만원) × 종합소득세율 + 2천만원 × 세율 14%

② 비교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 금융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금액 × 세율 14%(비영업이익의 경우 25%)

9)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구간별(국세통계연보)로 2,360만원(소득 2~3천만원 구간)~7억 8,624만원(소득 5억원 초과 구간)수준임. 1인당 평균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시가배당률(2022년 유가증권 평균 2.7%)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1인당 금융자산 규모는 8.7억원~291.2억원 수준으로 계산됨

10) 2022년 시장별 배당실적은 유가증권 26.6조원(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 2.7%), 코스닥증권 2.2조원(평균 시가배당률 1.9%)였으므로, 배당규모 등을 감안해 유가증권의 배당률을 반영함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3.4.20. 등)

□ (세율 변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현행 실효세율과 ISA 비과세 적용 시 세율 간 차이는 2022년 기준 종합소득 구간별로 13.3~41.0% 수준

[표 6]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실효세율 및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화: 2022년 귀속

(단위: 만원, %)

종합소득금액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개정안의 ISA	세율 차이 G=F-E
	1인당 평균 과세표준 금액	1인당 평균 산출세액	실효세율	국내투자형 ISA 세율	
	C	D	E=D/C	F	
2~3천만원	2,224	346	15.6	비과세	-15.6
3~5천만원	3,544	483	13.6		-13.6
5~6천만원	4,919	653	13.3		-13.3
6~7천만원	5,829	783	13.4		-13.4
7~8천만원	6,721	932	13.9		-13.9
8~9천만원	7,584	1,126	14.8		-14.8
9천만원~1억원	8,507	1,343	15.8		-15.8
1~2억원	13,008	2,692	20.7		-20.7
2~3억원	22,744	6,234	27.4		-27.4
3~5억원	36,295	11,480	31.6		-31.6
5억 원 초과	164,995	67,726	41.0		-41.0

주: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 등)이므로, 동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간 세수효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ISA에 매년 납입한도 금액만큼 납입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연간 소득세수는 8,2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소득구간별로 ‘인원×1인당 이자·배당소득금액×세율 차이’로 추정

[표 7] 국내투자형 ISA 신설 시 추가 감면세액 규모 추정

(단위: 명, 만원, %, 억원)

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H)	1인당 이자·배당소득금액 (J)			세율 차이 (G)	세수 변화 (K=H×J×G)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2~3천만원	17,988	594	664	736	-15.6	-166	-186	-206
3~5천만원	26,422				-13.6	-214	-239	-265
5~6천만원	10,587				-13.3	-84	-93	-103
6~7천만원	9,057				-13.4	-72	-81	-90
7~8천만원	8,103				-13.9	-67	-75	-83
8~9천만원	7,619				-14.8	-67	-75	-83
9천만원~1억원	7,212				-15.8	-68	-76	-84
1~2억원	47,474				-20.7	-584	-652	-723
2~3억원	19,859				-27.4	-323	-361	-401
3~5억원	16,122				-31.6	-303	-339	-375
5억 원 초과	20,386				-41.0	-497	-556	-616
합계	190,829	-	-	-	-	-2,444	-2,733	-3,028
						(3차연도 후, 전체) -8,205		

다. 전체 세수효과

□ ISA 비과세 구간을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 249억원, 2029년 8,454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조 7,655억원(연평균 3,5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ISA 비과세 구간 확대 및 납입한도 인상은 이미 가입된 ISA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세수효과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신규 ISA에 해당하므로, ISA 최소가입기간(3년) 후인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비과세 구간 확대·납입한도 인상	-249	-249	-249	-249	-249	-1,244	-249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	-	-8,205	-8,205	-16,411	-8,205
전체	-249	-249	-249	-8,454	-8,454	-17,655	-3,531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